

2000년대 이후 문화이주 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

-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 동 현 (제주대학교)

1. 들어가며
2. 귀농귀촌지원법과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
3. 문화이주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점
4. 문화 '이주'에서 '문화'적 삶의 변화로

1. 들어가며

2000년 이후 제주 이주 열풍의 특징을 지칭하는 용어로 '문화이주'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구통계 상 순유출 인구보다 순유입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이러한 명명은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확산되었다. 하지만 문화이주라는 용어가 정확히 어떤 규정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문화이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현상의 하위범주인지, 문화예술인 혹은 이질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이주민들의 증가를 지칭하는 말인지 아니면 문화 자체의 이전과 전파인지 그 개념을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정착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착 주민의 유형별 분류를 문화예술, 귀농·귀촌, 다문화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¹⁾ 하지만 이러한 분류에서도 문화이주와 귀농귀촌 이주의 동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제주 이주의 현상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류가 제주 이주 현상을 설명하는 변별적 특성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면 이주 동기를 기존과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한 응답은 문화예술(31.9%)와 귀농귀촌(29.4%)이 크게 다르지 않았

1)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정착 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2014.

다.2) 이주 동기에서 변별성을 갖지 못하는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문화이주라는 용어 자체가 엄밀한 개념 규정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현상적 측면을 지칭하는 임의적 정의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이주라는 용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제주정착주민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착 주민에 대한 정의와 귀농귀촌법의 이주민 규정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조례로 귀농·귀촌 이주를 포함해 타시도에서 전입해 오는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기존 법령에서 정착주민이라는 용어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우선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정착주민’이라는 외국 혹은 타시도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제주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³⁾

제주정착주민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착주민’의 개념은 기존의 귀농귀촌법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보다 포괄적이다. 귀농귀촌법은 귀농인과 귀촌인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귀농귀촌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는 기존의 귀농귀촌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귀촌 이주와 타시도에서 전입해온 “제주와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괄하

2) 위의 연구, 77쪽.

3)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고 있다. 타시도의 귀농귀촌 지원 조례 대부분은 귀농귀촌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다. 귀농귀촌이라는 용어가 농어촌 지역에 국한되는 개념이라면 제주 정착이주민은 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정착이주민이라는 용어는 다문화,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제주의 경우에는 다문화·북한 이탈주민에게 통용되던 정착이주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내리면서 일종의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주정착이주민 지원조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타시도 전입 주민들을 모두 정착이주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포괄적 개념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착주민지원 조례 이외에도 제주도는 이주민들이 제주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귀농귀촌지원 조례, 제주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례들은 이주 유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타시도에서는 귀농귀촌 지원조례가 사실상 정착 주민 지원 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해 제주는 별도의 정착주민지원 조례까지 제정하고 있다.

이주민 지원 조례의 등장은 제주 이주가 기존의 이주 현상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 유입인구의 증가 현상에 대해서는 제주이주, 제주이민, 문화이주 등 다양한 용어가 함께 사용되어 왔다. 이주의 사전적 용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사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와 사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할 때 타시도 유입 인구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귀농귀촌지원법과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

제주이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문화이주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주정착주민지원조례에는 “제주지역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제주문화가 타시도의 문화와 다르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제주문화는 타시도의 그것과 다르며 ‘이주민들의 유입=이질적 문화의 유입’이라는 인식을 조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정착주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상수로 인식하면서 도민과 정착주민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⁴⁾

4)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이주민 실태 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2014.

제주 이주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 배경에는 한국사회의 탈중심화와 이로 인한 주변 지역의 가치 절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근대화는 서울중심주의 강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중심의 강화는 기실 식민주의 내면화가 가져온 공간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간적 모순은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유럽 역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심-주변의 위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를테면 롤랑 바르트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유럽 사회의 중심-주변의 위계를 잘 지적하고 있다.

이를 넘어서서 우리 도시의 중심은, 중심이 진실의 장소가 되는 서구의 형이상학의 기본적 흐름과 일치하면서 풍요로움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 특별한 장소에 문명의 전체 가치가 모여들고 응축된다. 영혼성(교회), 권력(사무실), 돈(은행), 상품(백화점), 언어(카페와 산책로)가 모여 있는 것이다. 시내 중심가로 가는 것은 사회적 '진실'을 만나는 것이며, '현실'의 멋진 풍요로움에 참여하는 것이다.⁵⁾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다. 식민지 수탈과정에서 서울은 수탈의 대상이기도 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제국의 대리인이자 내부 수탈의 대리인이기도 했다. 일본-제국이라는 외부의 수탈자가 사라져버린 이후 서울은 내부의 공간을 폭력적으로 구획하면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러한 서울의 성장은 공간의 평등성을 왜곡한 결과였다. 지금도 서울은 여전히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의 역사는 뿌리 깊다. 역사적 기원의 유구함만이 문제가 아니다. 왜곡을 왜곡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왜곡 그 자체를 당연시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관습헌법이었다.⁶⁾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중심주의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모색되었다. 서울과 수도권에 권력과 부가 집중되

5) 롤랑 바르트, 김주환·한은경 역, 『기호의 제국』, 산책자, 2008.

6)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있는 계속적 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계속성), 이러한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속되어 중간에 깨어진 일이 없으며(항상성),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명료성),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국민적 합의)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으로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헌재 2004헌마554, 2004헌마566.

면서 나타내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에 따른 수도의 성격 규정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신행정수도이전 위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서울중심주의는 견고하다.

2000년대 이후 실시되고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역설적으로 서울이라는 가시적 공간의 폭력이 가져온 서울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적 차원의 성격이 짙다. 농촌과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현상은 귀농귀촌이라는 새로운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이어졌다. 귀농귀촌 지원과 관련한 법령에서는 국가차원의 지역개발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을 명문화하고 있다. 농림식품부의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농촌지역 시군의 인구 유입정책 지원, 귀농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각종 지원조직과 교육체계 마련이 대표적이다.⁷⁾

기존의 지원정책은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지속적인 농촌인구의 감소 현상으로 인한 지역의 인력·산업 구조를 변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귀농귀촌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정착주민 지원 정책은 기존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이를 위해 우선 관련 조문을 검토해 보자. 2005년에 제정된 귀농귀촌법은 모두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에 제정된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는 모두 22조이다. 우선 법과 조례의 목적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귀농귀촌법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한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통해 도민과 정착주민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여 정착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귀촌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는 정착주민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주민 간의 상생협력 촉진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7) 강대구, 「귀농·귀촌의 현황과 정책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제17권 4호, 2010.

귀농귀촌법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정착주민이 제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있는 제3조의 규정은 귀농귀촌법과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가 그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귀농귀촌법 제5조에서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귀농어귀촌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도 정착주민 지원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제6조), 정착주민지 데이터 작성(제8조), 정착주민지원위원회 설치(제11조), 정착주민 지원센터 운영(제19조)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귀농귀촌법의 지원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제주정착주민 지원 조례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 사업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착정보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정주관련 각종 정보제공 사업
2. 정착주민에 대한 창업, 취업 등 지원 사업
3. 정착주민에 대한 주거, 문화, 교통, 의료, 안전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4. 제주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현장 답사 기회 제공 사업
5. 마을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과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교육·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정착주민 제주융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7. 정착주민의 재능, 기술 및 경력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참여 촉진 사업
8. 정착주민에 대한 제주도민 환대 제고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귀농귀촌법과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는 기존의 귀농귀촌 지원 제도와 다른 선주민들과의 상생 협력 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조례가

경제적 개발과 이익 창출의 관점보다는 사회 통합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귀농귀촌지원법이 농어촌 발전을 위한 인력 활용과 지원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 제주정착주민 지원 조례는 정착지원과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3. 문화이주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제주정착주민지원 조례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주 현상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다. 이주의 대상과 현상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타시도의 이주정책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현재 타시도의 귀농귀촌 지원 조례는 대부분 귀농귀촌지원법을 준용해 지원 정책을 세분화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농촌 인구 감소가 지역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라는 귀농귀촌 이주자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2000년대 이후 제주 이주 열풍이 기존의 귀농귀촌 이주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제주 이주민의 증가를 제주 문화의 정체성과 충돌할 수 있는 이질적 존재들의 유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제주만의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기존 귀농귀촌 현상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생계형 귀농이주 외에 다양한 형태의 이주 유형들을 분석하면서 농촌생활에 대한 선호, 이상적인 삶의 실현, 건강에 대한 관심, 도시생활의 청산과 새로운 삶의 모색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귀농귀촌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이주에서 도시적 삶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라이프 리셋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 유형의 변화는 결국 경쟁과 효율이라는 도시적 삶의 문화를 탈피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귀농귀촌 이주의 변화는 단순히 도시적 삶을 이식하는, 도시적 삶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화를 회구하는 시대적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농산어촌에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증가하고 이들이 다양한 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방식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지리산과 섬진강 주변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룬 공지영의 『지리산 행복학교』에는 이러한 대안적 삶의 형태를 모색하는 이주민들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동네밴드를

결성하고 시인과 함께 문화 강좌를 진행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최근 귀농귀촌의 새로운 형태는 문화이주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주 이주 현상을 설명할 때 종종 등장하는 문화이주라는 용어는 그동안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제주 이주라는 현상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즉 귀농귀촌 현상의 하위 범주로 문화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종의 보통명사처럼 문화이주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문화이주는 학문적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 우선 문화이주라는 용어에 대한 이주민들의 반응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조랑말박물관 관장을 지냈던 지금중은 문화이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이민자’는 정확한 표현일까? 이 말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주했다는 걸 의미하는가? 아니면 문화적 이유로, 혹은 문화활동을 위해 이민을 했다는 걸까? 모호한 표현이다. 아마도 근래 지칭되는 제주 ‘문화이민자’의 경우는 예술의 활성화와 접근성, 즉 예술활동을 위한 인프라와 환경이 좋아서 이주를 하는 일반적인 문화 이주 사례와는 다르다는 측면에서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중략)

따라서 제주로 ‘문화이주’가 활발한 근본적 원인은 좁은 의미의 문화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문화적 이유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태적 가치의 확산, 무한경쟁 사회에서의 탈주, 느린 삶과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 추구 등 ‘삶의 방식’의 전환을 꿈꾸는 것이 핵심으로 보인다.⁸⁾

‘문화이민’과 ‘문화이주’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이 글에서 지금중은 ‘문화이주’의 개념을 문화예술인들의 이주가 아닌 대안적 삶의 문화를 모색하기 위한 이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이주를 생태적 가치의 추구하고 무한경쟁 사회에서 탈주하고자 하는 삶의 모색이라고 바라볼 때 제주 이주-귀농귀촌을 포함하는 생태적 가치와 무한경쟁 사회에서 탈주하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 추구라는 점을 보여준다. 귀농귀촌과 문화예술인 이주를 구분하여 이주 동기를 조사한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이주 동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존과 다른 삶에 도전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었다.⁹⁾ 삶의 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이주 동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이주를 단순히 문화예술인들의 이주로 국한하여 설명하는 것은 제주 이주 현상을 단편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¹⁰⁾

8) 지금중, 「제주 문화이민에 관한 몇 가지 짧은 생각」, 제주문화예술재단, 『삶과 문화』 32호, 2012.

9) 제주도, 앞의 연구.

10) ‘문화이주’ 용어의 문제점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수행한 『제주

제주정착주민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라는 정착 주민에 대한 정의 역시 정착 주민을 대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제주 정착 주민들은 제주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때문에 제주문화와 생활에 동화되어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질적 문화의 유입이 사회문화적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제주문화의 특수성과 변별성을 상대화하면서 타 문화의 유입과 그로 인한 제주 정체성의 해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¹¹⁾

2000년대 들어 인구 유입의 가속화와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제주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긍정적 인식과 함께 문화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낳게 했다. 제주인구 100만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의 수립과 함께 중국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¹²⁾ 이는 이주 인구의 유입이 제주 경제의 양적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제주 고유의 정체성의 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양가적 감정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 이주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의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 증가에 대한 양가적 입장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이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주 현상의 일면만을 편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인들의 이주를 설명하기 위한 한시적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념적 사용이 과연 지역의 문화적 변화 양상을 포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화전달은 문화 전달의 주체와 객체가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수용 방식 또한 상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라는 용어조차도 대단히 포괄적이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가) 지적, 정신적 미학적 발달의 전체적인 과정 나) 국민, 시대, 집단 또는 인간 전체의 특정한 생활 양식 다) 예술활동

의 문화다양성-문화예술가의 제주이주 현황조사』에는 문화이주자라는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문화이주자’는 그 기원이 정확하지 않으나 정체 담당자들과 언론 종사자에 의해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확산되고 있는 용어다. 용어 자체가 경계와 정체성이 불분명한 집단을 하나의 범주로 묶음으로써 오히려 개인적 다양성을 간과하고 분리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로 이주하는 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문화이주자’라는 용어는 그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제주도로 이주한 예술분야 종사자’에 대한 기초연구는 전무한 상황에서 ‘문화이주자’라는 용어는 편의적으로, 그러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2013.

11) 물론 제주문화가 육지부의 문화와 다르다는 점은 동의한다. 언어가 그러하고 인문환경 역시 물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변별성이 제주만이 지닌 특수성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12) ‘제주 인구 100만 대비 대규모 도시개발 추진’ 뉴스1, 2016. 7.6. ‘제주도 중국관광객 하루 1만명 빛 좋은 개살구’ 한겨레, 2013. 7. 26.

의 실천이나 그로부터 탄생되는 작품 등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¹³⁾

제주정착주민 지원 조례에서 '제주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이주민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는 제주 정착주민 지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주 이주 자체가 넓은 의미의 문화이주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문화이주를 제주 이주를 총칭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정착 주민 중에서 직업적 분류에 따른 현상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구분 이외에도 문화 이주라는 용어의 사용이 이주민 증가로 인한 제주문화의 정체성 훼손 혹은 왜곡에 대한 대항적 담론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4. 문화 '이주'에서 '문화'적 삶의 변화로

2000년대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사회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 설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를 우선시하는 이 법의 적용은 '특별자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사회문화적 토대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든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개발과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난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존도 위협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제자유도시의 목적 조항이 정치적 의제로 등장한 것은 시민사회 진영의 문제제기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미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이식하려는 중앙정치와 제주 정치권의 야합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주 이주가 도시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적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화이주, 문화이주자들의 삶의 태도는 제주 내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발과 성장지상주의를 벗어나 제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지대로서 문화이주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문화이주는 '이주'라는 형식에만 집중해왔다. 문화예술인 이주자들이 증가

13) 레이먼드 윌리엄스, 김성기·유리 역, 『키워드』, 민음사, 2010.

❖ 2017년 (사) 제주학회 45차 전국학술대회

하면서 그들이 생산하는 새로운 문화 향유와 매개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오히려 지금-여기 제주가 지향해야 하는 문화적 가치는 외면해 왔다. 제주 공동체적 질서를 위협하는 문화의 이질성을 통합의 관점에서 문화이주를 상대화한 측면이 많다.

이주자들을 제주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은 타자로 인식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관리 대상으로 여겨왔다. 이러한 인식이 또 다른 배타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이주라는 용어는 제주 이주현상을 설명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제주이주 현상에 담겨 있는 대안적 삶의 가치를 제주 사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제주공동체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